

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 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6. 12. 13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11월 20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21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6. 12. 13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종 인)

- 가. 제안이유
 -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사무소 신청사 준공에 따른 지번 변경으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
- 나. 주요골자
 - 혜화동사무소 소재지를 “명륜4가 1”에서 “혜화동 74-30”으로 변경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查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